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등 3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23. 8. 28 훈령 제321호

제1조(「이천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」의 개정) 이천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5항 중 “만 35세”를 “35세”로 한다.

제41조제3호 중 “만 8세”를 “8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」의 개정)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만 12개월부터 만6세 미만의”를 “12개월부터 6세 이하의”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시립도서관 자료대출 및 이용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이천시 시립도서관 자료대출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가입 시 유의사항 중 “만14세”를 “14세”로 한다.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